

지속가능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4년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천 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주요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과제를 담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와 산업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영호 (044-200-5530)
	수산자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백하림 (044-200-5538)

참고

제3차 낚시진흥 기본계획 요약

□ 기본계획 개요

- (근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3조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5년주기)
- (범위) ①낚시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관련 산업과 수산업의 연계 강화, ③수산자원의 조성보호, ④낚시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 주요 내용

- (비전)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
- (4대 추진전략) ①더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 ②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③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④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4개 분야 10개 과제) 】

<p>안전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p> <p>①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야간기준 보완, 안전교육 강화 등</p> <p>② 낚시 전용선 도입 검토 - 낚시 전용선박 개발·도입 추진</p> <p>③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GIS연계를 통한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p>	<p>정책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p> <p>④ 어업인·낚시인 갈등 최소화 - 어획량 할당제 단계적 도입 낚시면허제 검토</p> <p>⑤ 낚시터 이식승인 어종 확대 - 고수온기 낚시터 운영을 위한 이식 어종 확대</p> <p>⑥ 낚시 통제구역 관리 개선 - 지정·해제시 의견수렴 및 주기적 재검토</p>
<p>문화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p> <p>⑦ 낚시 쓰레기 배출 저감 추진 - 쓰레기 실태조사 및 캠페인 추진</p> <p>⑧ 낚시 여가 특별구역 등 지정 - 낚시여가구역 지정 및 복합타운 조성 추진</p>	<p>산업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p> <p>⑨ 민·관 상생 협력사업 추진 - 낚시체험교실 명예감시원 스포츠포싱 육성 등</p> <p>⑩ 낚시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홍보콘텐츠 개발보급</p>